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229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농협은행㈜

2. 조치내용

□ 공모펀드 판매시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에 대하여 농협은행에 과태료 73.5백만원 부과 조치

3. 조치이유

가. 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

⑴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

□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의 과정에서 설명할 때,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투자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여서는 안 되고,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○ 농협은행은 2021.10.6. ~ 2021.10.8. 기간 중 3개 공모펀드 12건(가입금액 46백만원)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인 자산운용사가 이들 펀드의 위험등급을 기존 등급과 달리 변경하였음에도 변경 전 등급이 기재된 상품설명서 등을 사용함으로써

- 일반금융소비자 12명에게 펀드의 위험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부당하게 권유하고, 실제 펀드의 위험등급과 다른 위험등급으로 펀드 상품을 설명하는 등 상품설명시 중요사항인 펀드의 위험성을 거짓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음 중요사항인 펀드의 위험성을 거짓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음

4. 근거법규

□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(설명의무) 제3항, 제21조(부당권유행위 금지) 제2호, 제57조(과징금의 부과) 제1항 제3호, 제69조(과태료) 제1항 제4호

□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4조 (과징금의 부과) 제4항 제1호, 제51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, [별표3], [별표4]

□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」 제34조의2(과징금의 부과기준), [별표 7]

□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제20조(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) 제1항 및 제3항, [별표 3]